

(사) 한국지반공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2008년 5월 16일 제정

2016년 9월 19일 개정

2020년 2월 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학문과 기술에 관한 저작물의 발표에 대하여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의 연구활동 지침을 마련하고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수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윤리 강령)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따른다.
2. 자신의 전문분야 안에서만 학문연구와 기술적, 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학술연구용역 수행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4. 사회적으로 공인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품위와 학회의 명예, 긍지를 지킨다.
5. 공공의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한다.
6.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용하여 학회에 법적, 도덕적 해를 끼치지 않는다.
7.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을 학회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제3조(윤리위원회) ①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부회장, 전담이사 및 상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필요할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2. 논문집편집위원장, 학회지편집위원장, 사업전담이사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실명의 제보가 있는 경우
 4.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문서로 요청이 있는 경우
-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적용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학회의 국문논문집, 영문논문집, 학회지 논문 및 기사

2.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
3. 기타 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저작물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제6조(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2. 변조 :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제7조(표절) ① 표절은 고의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③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8조(중복 투고) 투고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국외 학술지에 동시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9조(저자됨) 논문의 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논문을 위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2. 중요한 연구 내용에 대하여 논문을 작성하거나 주도적으로 교정
3. 논문 출판본에 대한 최종 승인
4. 논문 내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책임 등의

제10조(독창성) ① 투고논문은 이미 발표된 논문과 차별화된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 ②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①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논문집편집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사업전담이사 또는 상벌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 사업담당이사 또는 상벌위원회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윤리위원회에 안건상정을 요구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게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학회활동을 제한한다.
- ⑤ 학회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심)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가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번복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③ 학회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비밀보장)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①항 및 ②항을 위배한 자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에서 조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 및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한다.
3.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